

##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적용범위 ~ 제4조 비용의 부담 &lt;기재 생략&gt;</p> <p>제4조의2 대출계약의 철회 ①~⑥ &lt;기재 생략&gt; ⑦ &lt;내용 신설&gt;</p>	<p>제1조 적용범위 ~ 제4조 비용의 부담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제4조의2 대출계약의 철회 ①~⑥ &lt;현행과 동일&gt; ⑦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철회기한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,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 다만,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철회의사 확인 신설</p>